

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

심 사 보 고 서

2016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6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갑수)

가. 제안이유

- “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”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」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 상 : 신도림역 ~ 도림동 간 신설 보도교 명칭 제정

제안부서	제정안	위치	규모	비고
도로과	도림 보도육교	신도림역 ~ 도림쌍용플래티넘시티 간	폭 2.5m, 연장 104.6m	사업비 2,880백만원

○ 관련근거
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
- ※ 2016. 5. :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심의

○ 개 요

- 제정방법 : 지역사정에 밝고 주 이용자가 되는 보도교 소재지(도림동) 주민들의 의견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명칭 제정
- 명명사유 : 우리 구 지명이 들어있는 명칭으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 선정

3. 위원회 심사방법

- 원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도로과장의 보충 설명 등을 참고하여 질의·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14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6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“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”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」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대 상 : 신도림역 ~ 도림동 간 신설 보도교 명칭 제정

제안부서	제정안	위치	규모	비고
도로과	도림 보도육교	신도림역 ~ 도림쌍용플래티넘시티 간	폭 2.5m, 연장 104.6m	사업비 2,880백만원

나. 관련근거
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
- ※ 2016. 5. :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심의

다. 개 요

- 제정방법 : 지역사정에 밝고 주 이용자가 되는 보도교 소재지(도림동) 주민들의 의견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명칭 제정
- 명명사유 : 우리 구 지명이 들어있는 명칭으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 선정

라. 상정이유

- 신도림역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도림동 주민들의 신도림역 보행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설치한 도림동과 신도림역 간 보도교에 대하여, 지역특성을 잘 나타내고 주민 정서에 알맞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제정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널리 편익을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마.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


현장사진

보도육교 전경



육교 상부 전경



보도육교 야경

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규정
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제91조(지명의 결정)

- ① **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**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며, **시·군 또는 구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**
- ② 지명은 「지방자치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**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에 보고**하고,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다.
(이하 생략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

제7조(기능) **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**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2.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
3.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

제9조의 2(승인) **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 등은 확정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**